

「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첨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성기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9. 19.
- 회부일자 : 2025. 10. 13.
- 상정일자 : 2025. 10. 13.

2. 제안이유

- 이효석문화예술촌 군민 무료 전환으로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,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여 군민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평창군민 대상 관람료 면제
 - (기존) 관람료 50% 감면 → (변경) 관람료 면제
- 감면 근거 확대

- 다른 지자체와의 협약이나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시 감면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,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이효석문화예술촌의 관람료 체계를 개선하여 평창군민 누구나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6조제4항에서 평창군민의 관람료 50% 감경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6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함.
- 별표 4에서 평창군민의 관람료를 면제로 변경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이효석문화예술촌의 평창군민 관람료를 기존 50%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전환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및 문화예술 진흥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누구나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.
-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서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군민의 관람료 면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이효석문화예술촌의 202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, 군민 관람료 수입은 전체 수입 1억4천여만 원 중 약1.3%인 180여만 원(일반권 1,265천원, 통합권 550천원)에 불과하여, 면제 전환에 따른 세입 감소는 재정적 부담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, 전액 면제 시행 시 군민 만족도와 이용률 제고를 통해 문

화 복지 혜택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가 상승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, 시설 내 카페 소비 확대 유도, 나아가 외부 관광객에게 군이 주민 친화적 도시라는 긍정적 이미지 부각 등 파급 효과가 기대됨.

※ 참고자료(2024년 관람권 판매 결산)

| 연도 | 수량 | 판매액(원) | 비고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총계 | 78,068 | 142,091,500 | |
| 소계 | 31,597 | 67,172,500 | |
| 일반 | 27,284 | 60,788,000 | |
| 단체 | 3,301 | 5,119,500 | |
| 군민 | 1,012 | 1,265,000 | |
| 소계 | 16,751 | 71,575,000 | |
| 통합권 | 일반 | 14,398 | 64,791,000 |
| | 단체 | 2,078 | 6,234,000 |
| | 군민 | 275 | 550,000 |
| 소계 | 27,802 | 0 | |
| 무료 | 기타 | 9,834 | 0 |
| | 노인 | 17,040 | 0 |
| | 장애인 | 928 | 0 |
| 소계 | 1,918 | 3,344,000 | |
| 주민증 | 일반 | 614 | 736,000 |
| | 통합 | 1,304 | 2,608,000 |

불임 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로 하지 아니하다.

1. ~ 4. (생 략)

5. 교육 · 체육 · 문화 · 예술의 진흥

가. ~ 다. (생 략)

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
마. ~ 차. (생 략)

6. ~ 7. (생 략)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